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제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, 서울기술연구원,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·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. 이에 따라 각 연구원간 유기적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가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총괄·전담 기구,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
이를 반영하여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를 출범하여 운영

하고 있지만, 연구소의 설치·운영, 역할, 시 소속 공무원 등의
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는 바,

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
연구소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
연구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
발생원 조사,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,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
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.

또한,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
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을
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
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